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나.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부실경영 방지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시장도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다.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7조)
- 나.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로 변경함(안 제7조)
- 다. 시장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예

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연봉계약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출자·출연한 기관”을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같은 조 제2호)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2. “공사·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중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3항제1호, 제13조,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 본문, 제17조제4항 중 “출자·출연기관”을 각각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각각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작성하고”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u> <u>경영평가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가 <u>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u> <u>법인에</u> 대한 경영평가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 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이 <u>출자·출</u> <u>연한 기관의</u>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 성과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이 행실적평가 등에 관하여 실시 하는 평가를 말한다.	<u>인천광역시 공사·공단 및</u> <u>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u> <u>조례안</u> 제1조(목적) ----- -- <u>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u> <u>연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u>----- ----- ----- ----- -----. 제2조(정의) ----- ----- <u>다음 각 호와</u> ---. 1. ----- ----- <u>공사·공</u> <u>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u>----- ----- ----- ----- -----.

현행	개정안
<u>〈신설〉</u>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민법」 제32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u>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u>	2. “공사·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u>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u> 3. ----- ----- ----- <u>시</u>-----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u>	제3조(적용범위) ----- <u>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u>----- -----.
제4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u>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② 평가는 연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7조의	제4조(경영평가) ① ----- <u>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u>----- -----<u>하여야 한다.</u> ② ----- -----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 <u>출자·출연기관</u>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평가할 수 있다.	----- <u>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u>----- -----.
제7조(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제7조(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회) ----- ----- <u>인천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u>----- -----.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u>출자·출연기관</u> 담당부서 소속 실·국장 2. ~ 5. (생략)	제8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u>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u> ----- ----- 2.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u>출자·출연기관</u>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등) ----- ----- <u>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u>----- ----- -----.

현행	개정안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출자·출연기관</u>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간사) ----- ----- ----- <u>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u> ----- -----.
제15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u>출자·출연기관</u>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 4. (생략) ② (생략)	제15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 ----- ----- -----. 1. <u>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u>-----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경영평가의 위탁) 시장은 <u>출자·출연기관</u>에 대한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16조(경영평가의 위탁) ----- <u>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u>----- ----- ----- ----- ----- -----. 1.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7조(경영평가의 결과조치) ① 시장은 경영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u>작성하고</u>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평가의 결과 중 시정·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u>출자·출연기관의 장</u>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u>출자·출연기관의 장</u>은 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u>출자·출연기관의 예산</u>을 차등 지원하거나 <u>출자·출연기관의 장</u>의 연봉계약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권고·경고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제17조(경영평가의 결과조치) ① ----- ----- ---- <u>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u> -----. ② ----- ----- -- <u>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u>----- -----. ③ ----- <u>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u>----- ----- -----. ④ ----- <u>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u>----- ----- <u>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u>----- -----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차목 ○ 「지방자치법」 제22조 ○ 「지방공기업법」 제2조 ○ 「지방공기업법」 제5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 「민법」 제32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자. <생략>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자치시·자치군을 말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12.8]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